

1.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대학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사항 명시.

나. 주요내용

- 1) 산학협력과 산학협력처의 업무 구분 명확히 하도록 함
- 2) 산학협력처 산하에 현장실습팀을 설치 함
- 3) 총무처에 부부서장직을 설치하여 업무의 실무적 관장을 하도록 함.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없음
- 2) 예산조치 : 없음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7조(조직)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기획조정처, 교무처, 입학관리처, 학생복지처, 총무처, 비서실, 산학협력단(처), 총장직속기구로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(LINC)사업단, 평가관리실을 두며,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9 생략</p> <p>10. 산학협력단(처)에는 산학취업팀, 사업운영팀, 학교기업사업단을 둔다.</p> <p>11. LINC사업단에는 사업운영팀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7조(조직)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기획조정처, 교무처, 입학관리처, 학생복지처, 총무처, 산학협력처, 비서실, 산학협력단, 총장직속기구로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(LINC)사업단, 평가관리실을 두며,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9 좌동</p> <p>10. 산학협력처에는 산학취업팀, 현장실습팀을 둔다.</p> <p>11.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운영팀, 학교기업사업단을 둔다.</p> <p>12. 좌 동</p>
	<p>부 칙</p> <p>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2.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NCS기반 교육품질을 고려하여 졸업학점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됨.
- 2) 타대학과 비교해 볼 때 우리대학은 졸업학점이 낮은 편이며, 졸업학점 제한선에 해당되는 학생이 전체학생 대비 1% 미만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과에서 개설한 전체 학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졸업학점을 여유있게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실정임.
- 3) 일부 학생에 해당되기는 하나, 전공심화과정 지원에 학점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졸업학점 상향
- 2) 후기졸업의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고 졸업학점 교양교과 개정(안)에 따라 해당조건 수정
- 3) 수료학점 상향

다. 주요토의과제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	행	개	정 (안)
제46조(졸업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5학점(2년제), 112학점(3년제), 140학점(4년제)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8학점(필수6학점),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 3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 ④ 4년제학과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25학점(필수12학점) 현장실습 4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 	제46조(졸업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80학점(2년제), 120학점(3년제), 140학점(4년제)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필수 8학점,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 3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 ④ 4년제학과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25학점(필수14학점) 현장실습 4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
제47조(후기졸업)	<p>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교양교과 6학점(4년제 12학점) 미달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	제47조(후기졸업)	<p>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이 인정되는 조건을 갖추어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교양교과 필수 8학점[4년제 25학점(필수 14학점)] 미달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
제49조(수료)	<p>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학년 수료 : 38학점(구-35) 이상(20090212-2009학년도 입학생 적용) 2. 2학년 수료 : 75학점(구-70) 이상(20090212-2009학년도 입학생 적용) 3. 3학년 수료 : 112학점(구-105) 이상(20090212-2009학년도 입학생 적용) 	제49조(수료)	<p>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학년 수료 : 38학점 이상 2. 2학년 수료 : 80학점 이상 3. 3학년 수료 : 120학점 이상
		부	<p>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6조 2항, 3항, 4항, 제47조 1항 2호, 제49조 2호, 3호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.</p>